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56621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4. 12. 11.

판결 선고2015. 1.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21,035원 및 그 중 218,362,012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4. 11. 2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4. 7. 11. 접수 제30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① 2011. 6. 20.경 보증한도 4,500만 원, 보증기간 2011. 6. 20.부터 2012. 6. 19.까지로, ② 2012. 8. 10.경 보증한도 1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2. 8. 10.부터 2013. 8. 9.까지로 각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4. 6. 19.까지로 연장되었다.
- 2) 위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 3) 피고 회사가 2014. 5. 10.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8. 14.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금 2억 1,500만 원, 이자 3,362,012원 합계 218,362,012원을 변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992,253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약금 666,770원이 발생하였다.
- 4)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218,362,012원, 채권보전비용 992,253원, 위약금 666,770원 합계 220,021,035원 및 그 중 구상금 218,362,0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인 2014. 11. 20.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7. 11.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100만 원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재판장판사박영재

판사정종륜

판사봉지수

별지